

제 호

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서

1. 기 관 명 :
2. 대 표 자 :
3. 소 재 지 :

위 기관을 「발명진흥법」 제4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특허청장

직인